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5.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미애의원)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 현행법에 따른 참전 관련 법정 공법단체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있으며, 그 회원으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인정하고 있음.¹⁾
- ☐ 6·25참전유공자회는 현재 회원이 3만8천여명(2024년 6월 기준)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2세에 달해 곧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법에 따른 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개정안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범위를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계속하여 국가의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훈단체의 존속 및 저변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 따른 17개 공법단체 중 유족만을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회원으로 하는 단체 4개²⁾와 유공자와 유족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2개³⁾를 제외한 11개 단체는 회원이 유공자 본인인데, 이 중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단체는 모두 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음.

○ 이는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대신 지원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단체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가족 등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단체 회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유공자 본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범위를 유·가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회원의 고령화 문제를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회원자격 확대 요구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회원은 상징성과 선양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유공자가 신체적 희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계유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 국외 참전단체도 대부분 본인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3)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유족은 단체 준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